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검찰정상화법안 통과

- 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여죄 보완수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별건수사의 폐단은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 3]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

-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제396-1차), 5월 임시국회(397-1차)에서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검찰정상화법안 2건과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였음.
-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 수사로 일원화 하는 내용임. 또한 검사가 직접 수사했을 경우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은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임.
- 또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통과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는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켜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통과로 검찰 기능의 정상화의 길을 열었음. 이를 통해 검찰이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며 대한민국의 수사역량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향후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보완점은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음.

2022. 5. 3.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